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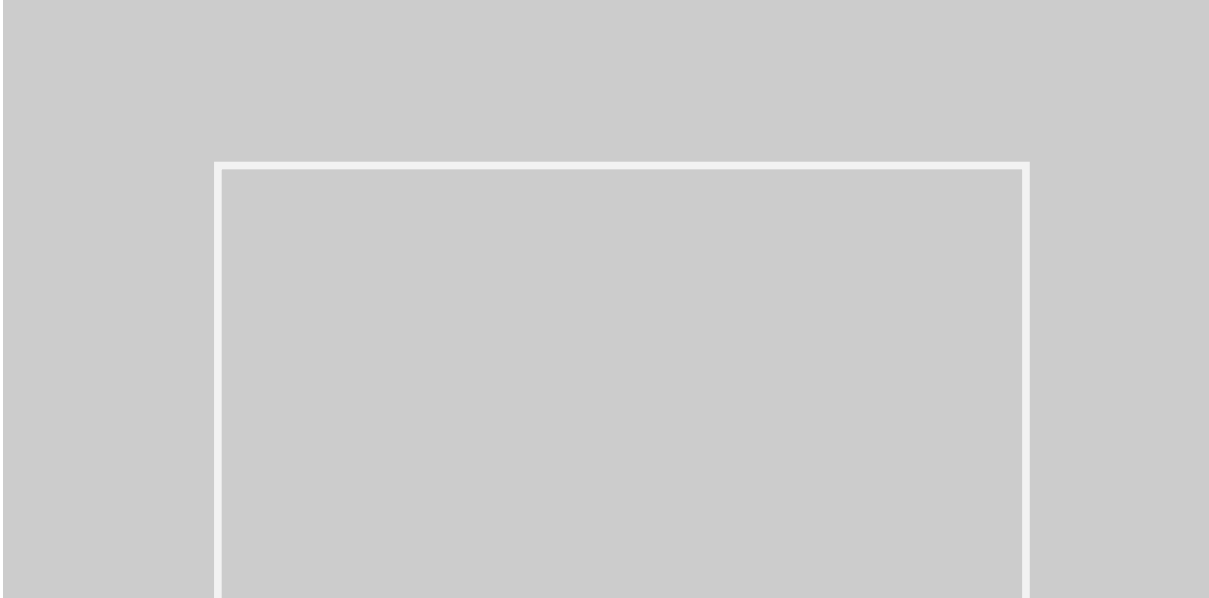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2026. 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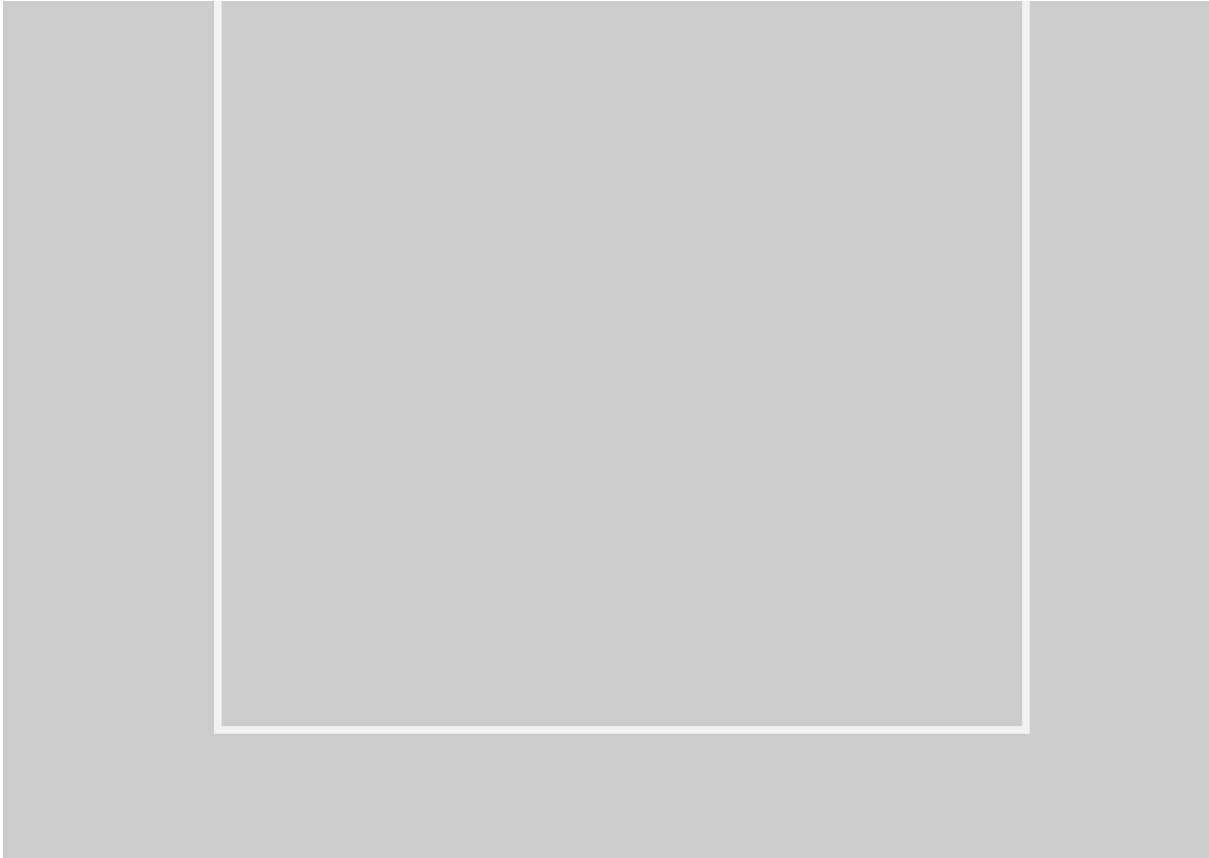
관계부처 합동

순서

[요 약]	i
I. 추진 배경	1
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군 복무청년 상해·질병 보장 강화	2
2.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5
3. 군 복무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7
III. 향후 일정	11



요약



1 추진 배경

-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으나, 청년들의 실질적 체감은 부족한 상황*

* 남성의 군 복무 의무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20대 남성의 68%, 30대 남성 75%가 "그렇다"고 대답**(서울대 미래전략원·조선일보, '26.4)

⇒ 군 복무에 상응하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층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과제 발굴·개선 필요

🔊 국방부 업무보고 中 대통령 말씀('26.8.)

"군 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다친 청년들이 치료비나 보상 문제로 억울함을 겪는 일이 단 한 건도 없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총리 주재, '26.6.9)에서 군 복무 청년 관련 개선방안을 토론과제로 상정, 논의

- BH·총리실·관계부처간 협의('26.6~8월)를 통해 추진방안 도출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군 복무 청년 상해·질병 보장 강화 (국방부)

□ 현황 및 한계

-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해 군병원 무상진료, 민간병원 진료비, 사망·장애보상금 등을 지원 중이나,
 - 제한적 인프라(군병원), 지원한도 제한(민간병원 진료), 협소한 보상범위(재해보상,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등 폭넓은 지원에 한계
-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을 통해 주민등록된 청년 입대 시 상해보험 자동 가입을 지원 중이며, 청년 만족도도 높은 상황**

* 4개 광역지자체(경기·전북·인천·광주) + 일부 기초지자체(서울 강북구, 동작구, 마포구, 중구, 중랑구 등)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 군 복무 중 발생하는 동일한 질병·상해에 대해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여부·지원항목 및 보상수준 등에 차이 발생

□ 개선방안 :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

- 병사(현역병, 상근예비역) 상해보험을 도입('27.7~)하여 모든 의무복무 청년이 입대와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
 - ※ (대상) 현역·상근예비역('27년 약 29만명), ('27년 정부 예산안) 69억원('27.7~12월)
- 현행 제도로는 보장되지 않는 경증 상해 등에 대해 진단금, 위로금, 수술·입원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원하여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청년들의 높은 만족을 얻은 경기도 상해보험을 참고하여 사망·후유장애, 골절·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게 보장
 -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 마련 및 적정 보험료 수준 도출 추진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구분	보장액	구분	보장액
사망(상해/질병)	5,000만원	화상 진단금	25만원
영외체류기간중 교통 상해/사망	최대 2억원	골절 진단금	3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후유장애	최대 2,00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금	100만원
후유장애(상해/질병)	최대 5,0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입원비(상해/질병)	4만원/일당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00만원
수술비	20만원	중증장애 진단금	1,000만원

※ 기존 제도(「군인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및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로는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

2.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

□ 현황 및 한계

- 보훈부는 복무 중 상해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해 군 복무와의 인과성 인정 시 보훈·위탁병원 의료비 전액 지원 중이나,
 - 미인정 시 중증·난치성 질환에 한해 본인 부담금의 50%만 지원
 - 지원범위가 좁고(경증질환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도 충분하지 않아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의료비 부담 가중
- 전역 후 발생한 후유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의료보장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청년 개인 또는 가족이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 다수

□ 개선방안 : 공공 실손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

- 의무복무 병사(현역, 상근예비역)가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실손보험에 가입('27.7~)하고,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

※ (대상) 제대군인('27년 약 9만명, '28년~ 약 18만명), ('27년 정부 예산안) 75억원('27.7~12월)

-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 및 중증·난치성 여부와 관계없이 제대군인 청년이 실제 부담하는 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민간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 보장

*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국내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보험구조와 조건으로 공동 판매하는 정책성 실손의료보험

-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 마련 및 적정 보험료 수준 도출 추진

<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구 분		자기부담률	보장한도
급여 항목	입원	20%	5,000만원
	통원	Max(건보본인부담률, 20%, 1~2만원)	
비급여 항목	중증	30%	5,000만원
	비중증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	1,000만원

3. 군 복무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각 부처]

□ 현황 및 한계

- 공무원 등 채용 시에는 제대군인지원법령(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복무기간별로 응시연령 상한을 1~3년 연장*해주고 있음

*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연장 / (1~2년 미만) 2년 연장 / (2년 이상) 3년 연장

- 반면, 각종 청년정책 사업은 지원 연령은 군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연장해 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양*

* (예) 청년미래적금(청년기본법상 상한은 34세이나, 군복무 기간만큼 6년 이내에서 연장)
vs 청년월세지원사업(34세 연령상한으로 연장 불허)

→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축소되지 않도록 군 복무 청년*의 지원연령 연장 필요

* 전역한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및 장교·부사관 등 군 복무 청년

□ 개선방안: 군 복무기간 반영,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 '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389개 중, ①연령요건이 없는 사업(예: 대학생), ②시설·인프라 조성, ③제도개선·정보제공, ④대학·기업 등 간접지원 사업을 제외한 115개 사업 검토

※ (예) ① 국가장학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② 청년센터 운영, 대학기숙사 확충
③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④ AI·SW 중심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등

- 검토대상 사업(115개) 중 군복무 기간 연장 既반영 40개, 미반영 75개
→ 미반영 사업 75개 중 연장 실익 등을 고려, 우선 34개 사업 개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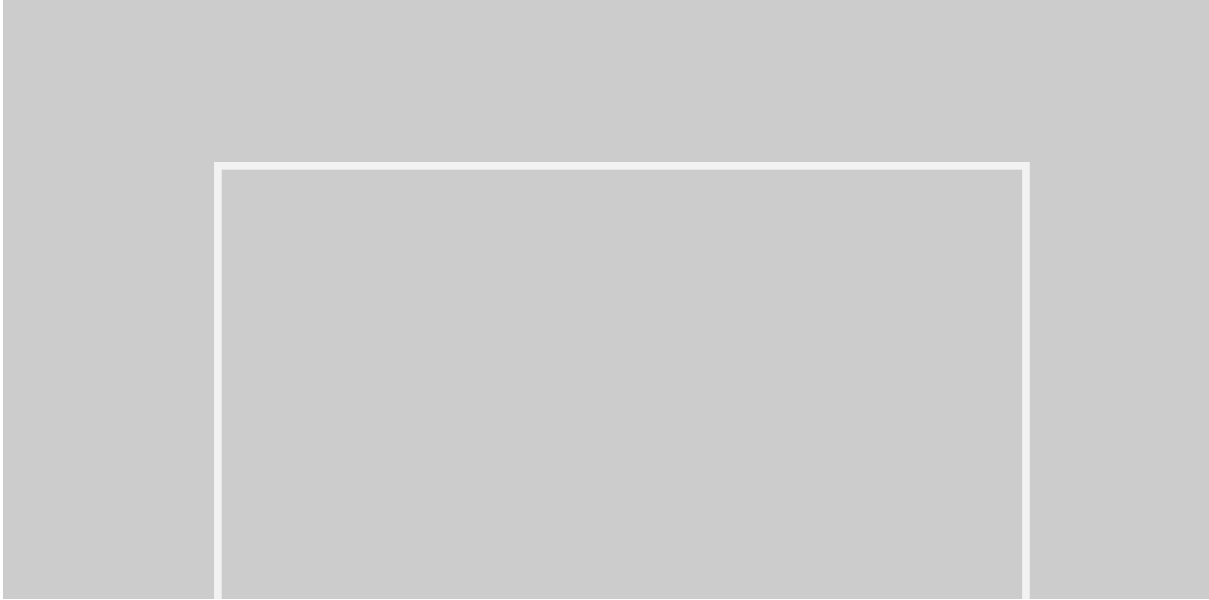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여부 조사 결과>

구분	연령기준	추진 방안	검토 결과	
검토 대상 (115개)	34세 상한사업	군복무로 정책 혜택기간이 축소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원칙적으로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지원연령 상한 연장	既반영	37개
			개선추진	17개
	39세 상한사업	이미 청년기본법상 연령보다 넓게 운영되는 점을 고려, 정책 혜택기간 축소 여부와 연장 실익에 따라 선별 적용	계속검토	9개
			既반영	3개
			개선추진	17개
			현행유지	3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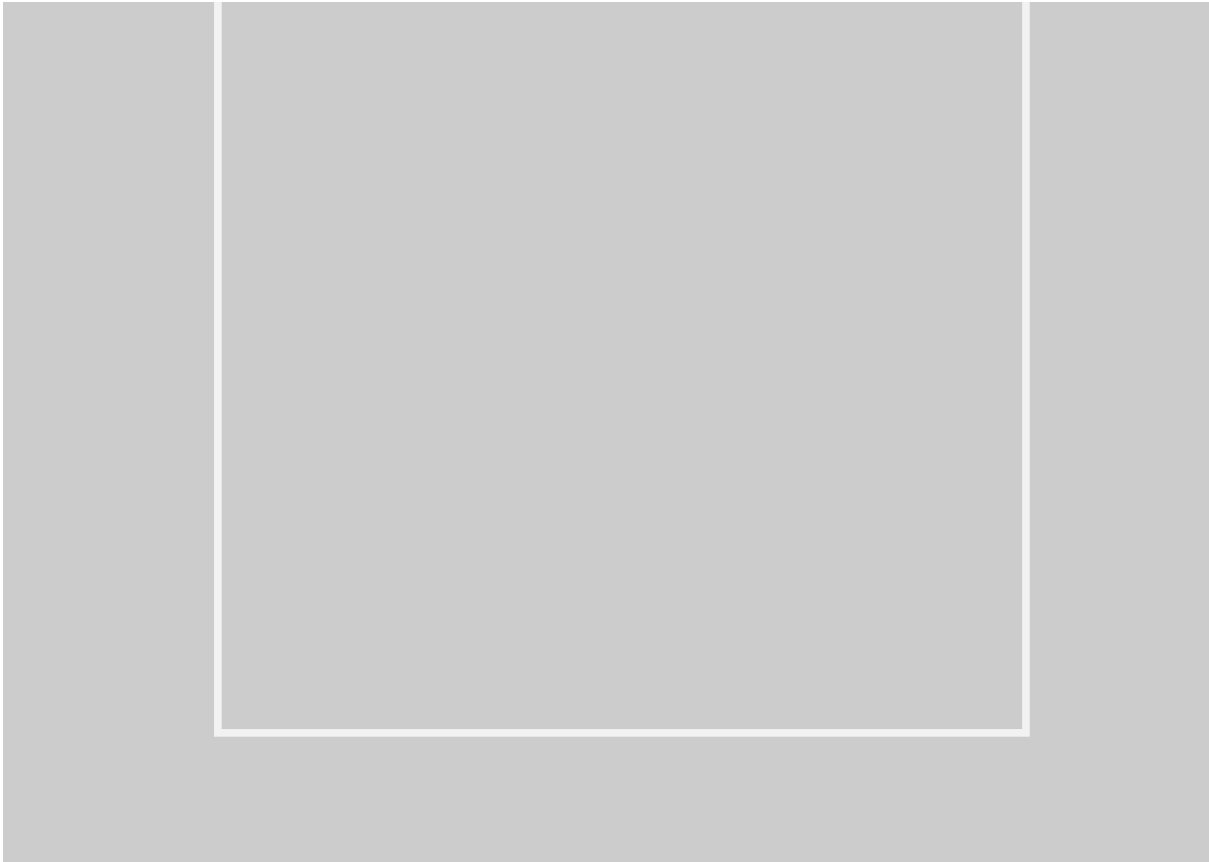
- (34세 상한사업) ▲취·창업, 주거, 금융 등 주요사업은 개선추진
▲시스템 구축,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계속검토
- (39세 상한사업) ▲주거·농어업인 양성 등 39세 이후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개선추진 ▲취·창업 등 지원 사업은 정책수요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유지
-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3 향후 일정

- (상해보험·실손보험 도입) 공공 보험설계안 마련('26.下)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보험 계약 절차 추진('27.上) → 서비스 개시('27.7~)
- (지원연령 상한 연장) 부처별 34개 사업 정비 추진('26.下) 및 시행('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보훈부, '27~)



החל



I. 추진 배경

□ 필요성

-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으나, 청년들의 실질적 체감은 부족한 상황**

*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한도 상향('25),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25), 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 구축('26.5), 군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 도입('26.6) 등

** 남성의 군 복무 의무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20대 남성의 68%, 30대 남성 75%가 "그렇다"고 대답**(서울대 미래전략원·조선일보, '26.4)

⇒ 군 복무에 상응하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층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과제 발굴·개선 필요

🔊 국방부 업무보고 中 대통령 말씀('26.8.)

“군 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다친 청년들이 치료비나 보상 문제로 억울함을 겪는 일이 단 한 건도 없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 경과

-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총리 주재, '26.6.9)에서 군 복무 청년 관련 개선방안을 토론과제로 상정, 논의

* ①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확대, ②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③ 군 복무로 인한 청년정책 연령 연장

- BH·총리실·관계부처(국방부·보훈부·과기부) 합동 실무회의(6.24, 8.3, 8.20) 등을 통해 '①군 복무청년 상해·질병 보장 강화', '②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

- 총리실 주관 청년정책 전수조사('26년 시행계획 기준) 및 부처협의·조정을 통해 '⑥군 복무기간 반영 청년연령 연장' 추진과제 확정

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군 복무 청년 상해·질병 보장 강화 [국방부]

[현황 및 한계]

□ 지원 항목 및 범위 등 제한적

- **(현황)**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중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해 군병원 무상진료, 민간병원 진료비용, 사망·장해보상금 등을 지원 중
- **(한계)** 제한적 인프라(군병원), 지원한도 제한(민간병원 진료), 협소한 보상범위(재해보상,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등 폭넓은 지원에 한계
 - * (예) 골절의 경우, 골절에 따른 변형·장애가 남아있거나, 경추·척추·대퇴골 골절 등 심각한 골절에 한해 장해보상금 지급

<현역 병사 의료지원 현황 및 한계>

구 분	지원 내용	한 계
① 군 병원 무상 진료	• 복무 중 발생한 상해(골절, 화상 등)·질병에 대해 무상 진료	• 군 병원 진료의 질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제한적 인력·인프라 등 여전히 한계
② 민간병원 자율진료비	• 병사가 원하는 경우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 지원 * 건보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의 80%까지 지원	• 지원 한도 및 자부담금(최소 2만원)으로 개인부담 여전 * (금액) 복무 중 1인 100만원 (범위) 비급여·치과·한방 미지원
③ 재해보상 제도	•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장애에 대해 보상금 지급 * 사망(1.4억원~), 장애(17백만원~)	• 장해보상금 지급 대상이 비교적 심한 상해·장애로 제한되어 있어, 경증인 상해에 대해서는 지원 한계
④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 재해보상 제도가 미치지 않는 부대 밖(휴가·외출·외박) 상해에 대해 보완적으로 보험금 지원	• 보장범위 협소(최근 5년간 지급된 보험금이 32건(연평균 6건), 총 10억원에 불과) * 부대 밖 보장에 집중, 부대 내에서는 폭발·화재 등 제한적 상황에 대해서만 보장

□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편차 발생

- **(현황)**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을 통해 주민등록된 청년 입대 시 상해보험 자동 가입을 지원 중이며, 청년 만족도도 높은 상황**

* 4개 광역지자체(경기·전북·인천·광주) + 일부 기초지자체(서울 강북구, 동작구, 마포구, 중구, 중랑구 등)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 (한계) 군 복무 중 발생하는 동일한 질병·상해에 대해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여부·지원항목 및 보상수준 등에 차이 발생

☞ 지자체 상해보험 보험금 수혜 사례

- ▶ (경기) 20대 현역병 A씨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암 진단, 민간 병원에서 암 제거 수술 및 입원 → 진단금, 수술비 등 300만원 보험금을 수급, 많은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
- ▶ (전북) 20대 현역병 B씨는 지난해 유격 훈련에서 발목 골절, 국군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및 20일 입원 치료 → 치료 종료 6개월 뒤 후유장애 10% 진단을 받아 골절 진단금, 수술비, 상해후유장애 보상금 등 610만원 보험금 수급

[개선방안 :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

- (주요내용) 병사(현역병, 상근예비역) 상해보험을 도입('27.7~)하여 모든 의무복무 청년이 입대와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
 - ※ (대상) 현역·상근예비역('27년 약 29만명), ('27년 정부 예산안) 69억원('27.7~12월)
- 현행 제도로는 보장되지 않는 경증 상해 등에 대해 진단금, 위로금, 수술·입원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원하여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보장사항) 청년들의 높은 만족을 얻은 경기도 상해보험을 참고하여 사망·후유장애, 골절·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게 보장
 -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 마련 및 적정 보험료 수준 도출 추진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구분	보장액	구분	보장액
사망(상해/질병)	5,000만원	화상 진단금	25만원
영외체류기간중 교통 상해/사망	최대 2억원	골절 진단금	3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후유장애	최대 2,00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금	100만원
후유장애(상해/질병)	최대 5,0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입원비(상해/질병)	4만원/일당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00만원
수술비	20만원	중증장애 진단금	1,000만원

※ 기존 제도(「군인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및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로는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

< 참고 :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비교 >

			(국방부)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10.3월~)	(국방부) 병사 상해보험(안) ('27.7~)
대상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한 현역병 * 대부분의 현역병이 발급	현역병, 상근예비역
보장 항목 및 한도 (‘26)	진 단 금		◦ (화상 진단금) 20만원	◦ (화상 진단금) 25만원 ◦ (골절 진단금) 30만원 ◦ (뇌출혈 진단금) 300만원 ◦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00만원 ◦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 (외상성절단 진단비) 100만원 ◦ (중증장해 진단비) 1천만원
		입 원· 수 술	◦ (상해흉터복원 성형수술비) 최대 500만원 ◦ (화상수술비) 최대 50만원	◦ (입원일당, 180일 한도) 4만원/일 ◦ (수술비) 20만원/회 ◦ (특정손가락발가락수술비) 20만원/연간
		생 명· 상 해	◦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사망) 4억원 ◦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최대 4억원X지급률	◦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사망) 2천만원 ◦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최대 2천만원X지급률 ◦ (상해사망) 5천만원 ◦ (상해후유장해) 최대 5천만원X지급률 ◦ (질병사망) 5천만원 ◦ (질병후유장해, 80%이상) 5천만원
	부대 밖		◦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상해사망/상해 후유장해) 4억원 / 최대 4억원X지급률 ◦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1억원 / 1억원X지급률	◦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상해사망/상해 후유장해) 2억원 / 최대 2억원X지급률
	기타		◦ (사이버금융범죄 피해) 피해액의 70% (최대 300만원) ◦ (착오송금 회수비용) 최대 700만원	

※ 군인재해보상 제도 : 일반 병사의 경우 사망보상금(1.4~3.4억원), 장애보상금(1,700만원~1.3억원) 지급

2.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

[현황 및 한계]

□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현황

- (현황) 보훈부는 복무 중 상해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해 군 복무와 인과성이 인정되면 보훈·위탁병원에서의 의료비 전액 지원 중이나,
 - 군 복무와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증·난치성 질환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만 지원(경증질환은 지원 제외)
- (한계) 군 복무와의 인과성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원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원범위가 좁고(경증질환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도 충분하지 않아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의료비 부담 가중

〈제대군인 의료비 지원 현황 및 한계〉

구 분	지 원 내 용	한 계
① 보훈 병원 등 무상 진료	• 군 복무와 인과성 입증시 진료비 전액 지원 * 보훈병원(6개소), 보훈위탁병원(1,029개소)	•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부상·질병과 군 복무와의 인과성 입증에 어려움
② 중증·난치성 질환 진료비 일부 지원	• 인과성 미인정시 중증·난치성 질환에 한해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 일부(50%)만 지원하고 있어 치료비 부담이 크며 경증질환은 지원 제외

□ 군 전역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 필요

- (현황) 군 전역 후 발생한 후유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의료 비용을 청년 개인 또는 가족이 부담하는 사례 다수

🔊 사례

- ▶ 30대 A씨는 군 복무 중 총기훈련 등으로 청력저하 증상을 겪었음에도 군 복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다른 치료 없이 전역하였으나, 여전히 이명·난청 증상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 중

- (한계) 전역 후 학업·취업준비 등으로 경제력이 감소하여 진료비 부담능력이 부족한 청년에 대한 의료보장 지원체계 미흡

🔊 **해외 사례: 미국의 TAMP(Transitional Assistance Management Program) 제도**
 ▶ 비자발적 명예 전역자, 전역 후 예비군 즉시 입대자 등 전역군인과 그 가족에게 군 의료보험*(TRICARE) 혜택을 180일간 보험료 없이 자동 연장
 * 군 병원 무상진료, 민간병원 진료비 환급 등 혜택 제공

[개선방안 : 공공 실손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

- (주요내용) 의무복무 병사(현역, 상근예비역)가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실손보험에 가입('27.7~)하고,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
 - ※ (대상) 제대군인('27년 약 9만명, '28년~ 약 18만명), ('27년 정부 예산안) 75억원('27.7~12월)
-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 및 중증·난치성 여부와 관계없이 제대군인 청년이 실제 부담하는 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보장사항) 민간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 보장
 - *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국내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보험구조와 조건으로 공동 판매하는 정책성 실손의료보험
- 제대군인 청년이 민간병원에서 실제 치료 후 지불한 비용에 대해 실손보험을 통해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부분 보전
-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 마련 및 적정 보험료 수준 도출 추진

〈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구 분		자기부담률	보장한도
급여 항목	입원	20%	5,000만원
	통원	Max(건보본인부담률, 20%, 1~2만원)	
비급여 항목	중증	30%	5,000만원
	비중증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	1,000만원

3.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각 부처)

[현황 및 한계]

□ 청년정책 사업별로 군 복무기간 인정 여부 상이

- (현황) 공무원 등 채용 시에는 제대군인지원법령(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복무기간별로 응시연령 상한을 1~3년 연장*해주고 있음

*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연장 / (1~2년 미만) 2년 연장 / (2년 이상) 3년 연장

- (한계) 반면, 각종 청년정책 사업은 지원 연령은 군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연장해 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양*

* (예) 청년미래적금(청년기본법상 상한은 34세이나, 군복무 기간만큼 6년 이내에서 연장)
vs 청년월세지원사업(34세 연령상한으로 연장 불허)

-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축소되지 않도록 청년연령 연장 필요

[개선방안: 군복무 기간 반영, 지원연령 상한 연장]

□ '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389개 중,

- ❶연령요건이 없는 사업(예: 대학생), ❷시설·인프라 조성, ❸제도개선·정보제공, ❹대학·기업 등 간접지원 사업을 제외한 115개 사업 검토

※ (예) ❶ 국가장학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❷ 청년센터 운영, 대학기숙사 확충
❸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❹ AI·SW 중심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등

- 검토대상 사업(115개) 중 군복무 기간 연장 既반영 40개, 미반영 75개
→ 미반영 사업 75개 중 연장 실익 등을 고려, 우선 34개 사업 개선 추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여부 조사 결과>

구분	연령기준	추진 방안	검토 결과	
검토 대상 (115개)	34세 상한사업	군복무로 정책 혜택기간이 축소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원칙적으로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지원연령 상한 연장	既반영	37개
			개선추진	17개
			계속검토	9개
	39세 상한사업	이미 청년기본법상 연령보다 넓게 운영되는 점을 고려, 정책 혜택기간 축소 여부와 연장 실익에 따라 선별 적용	既반영	3개
			개선추진	17개
			현행유지	32개

① 34세 상한 사업 * 17개 개선추진

- ① (既연장 : 37개) 청년 일경험 지원, 청년미래적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등 사업은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중
- ② (개선추진 : 17개) 복무기간만큼 1~6년 지원연령 연장 추진
- ③ (계속검토 : 9개) 제대군인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또는 추가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계속 검토

< 34세 상한 사업별 개선계획 >

구분	주요 사업 (소관부처)	개선계획
① 既연장 (37개)	- 청년미래적금 (금융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우대 (재경부)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노동부)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청년인턴 (전부처, 재경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노동부)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중
② 개선 추진 (17개)	< 취·창업/인재양성 (12건) > - 청년성장프로젝트 (노동부)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외교부) - 청년창업자 세무교육 등 지원 (국세청) -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과기정통부) - 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문체부)	-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 사업지침 개정 및 시행(27)
	< 청년주거/금융 (3건) > - 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부) - 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 (금융위) - 청년미래이음대출 (금융위)	
	< 참여 (2건)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전부처) - 청년정책조정위·실무위·전문위 (총리실)	-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 위원 위촉 시 즉시시행
③ 계속 검토 (9개)	-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노동부) -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국토부) -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금융위)	중장기 검토

② 39세 상한 사업 * 17개 개선추진

- ① (既연장 : 3개) 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연령 연장 등 군 복무기간 기반영 추진 중
- ② (개선추진 : 17개) 주거 및 농·어업인 양성 지원 사업은 정책 수요가 상대적으로 30대 후반까지 늦게 발생하며 진입기반 형성에 상당 기간 필요한 점 감안, 39세 이후까지 지원연령 연장 추진
- ③ (현행유지 : 32개) 취업지원·교육 등은 정책 수요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생하여, 개선 필요성이 낮으므로 현행 유지

< 39세 상한 사업별 개선계획 >

구분	주요 사업 (소관부처)	개선계획
① 既연장 (3개)	•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과기정통부) • 문학관 청년 인턴십 지원 (문체부)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부)	• 최대 3년 연장(42세 까지) • 군복무 기간 최대 2년간 적립중지
② 개선 추진 (17개)	< 청년 주거공급·금융 (국토부) > •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 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 청년층 매입임대/전세임대/청년특화주택 •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복무기간만큼 연장 추진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27)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 청년 농업인 양성 (농식품부)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임대형 스마트팜 • 청년 창업농 장학금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	• 복무기간만큼 연장 추진 • 사업지침 개정 및 시행('27) * 법령 개정 불요
	< 청년 어업인 양성 (해수부) > • 청년바다마을 조성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③ 현행 유지 (32개)	< 취업지원·인재양성 > • AI 청년인재 이어드림스쿨 (중기부) • 무대기술/디자이너 등 인턴십 (문체부) •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문체부) < 창업 (중기부) > • 청년창업사관학교 (중기부) • 청년전용창업자금 (중기부) •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제공 (금융위)	• 정책 수요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생하여, 개선필요성이 낮으므로 현행유지

〈 참고 : 군복무 기간 반영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사업 〉

1. 34세 상한 사업 (17개)

연번	사업명	소관부처
1	청년성장프로젝트	노동부
2	경쟁형 AI혁신인재 성장지원	과기정통부
3	중소벤처기업 청년기술평가 체험단 운영	중기부
4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외교부
5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역량강화	외교부
6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청
7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	문체부
8	K-글로벌 방송영상 콘텐츠 교육과정	문체부
9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문체부
10	식품·외식기업 청년인턴십	농식품부
11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위사업청
12	청년 창업자 지원 활성화	국세청
13	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부
14	청년 전월세 대출 공급 보증 지원	금융위
15	청년미래이음대출	금융위
16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총리실
17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전문위원회	총리실

2. 39세 상한 사업 (17개)

연번	사업명	소관부처
1	공공분양 청년특별공급	국토부
2	청년 맞춤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국토부
3	청년 맞춤형 매입임대	국토부
4	청년 맞춤형 전세임대	국토부
5	기숙사형 청년주택	국토부
6	청년특화주택	국토부
7	공공지원민간임대	국토부
8	청년농CEO 양성과정 운영	농식품부
9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식품부
10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농식품부
11	임대형 스마트팜	농식품부
12	청년 창업농장학금	농식품부
13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식품부
14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	농식품부
15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	농식품부
16	청년바다마을 조성	해수부
17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해수부

Ⅲ. 향후 일정

□ 상해보험·실손보험 도입 관련

- (설계안 마련) 합리적인 공공 보험설계안 및 보험료 수준 도출('26.下)
- (시행 준비)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보험 계약 절차 추진('27.上)
- (사업 개시) 병사 상해보험 및 제대군인 실손보험 서비스 개시('27.7~)

□ 군 복무 청년 지원연령 연장

- (지원연령 개선) 부처별 개선 추진 34개 사업 정비 추진('26.下) 및 시행('27~)
 - * 개별 사업별로 추진일정은 상이할 수 있음
- 지자체 청년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금번 중앙부처 개선 기준을 준용하여 군복무 기간을 반영한 지원연령 연장 추진토록 조치·독려
- (법적근거 마련) 보훈부는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포괄적 근거법령 마련(「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의무복무이행에 따른 연령산정의 특례) 신설(안)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서 연령 상한 연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